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년 11월 30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4년 12월 7일

라. 상정일자 : 2004년 12월 22일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

나.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관리책임
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공중화장실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참고사항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석 광

-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현재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제정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 또한 공중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이자 사회생활 중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적인 법체계의 미비와 자치단체의 관심부족으로 시민과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남·여 화장실의 불균형과 장애인용 화장실의 미비로, 여성과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공중화장실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